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6누799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 |
| 피고, 피항소인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
| 제 1 심 판 결 | [redacted]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119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2. 21. |
| 판 결 선 고 | 2017. 3. 21.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484,640원, 지방교육세 3,310,220원, 농어촌특별세 2,043,070원, 등록면허세 102,362,580원, 지방교육세 17,386,050원 합계 119,74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C 대 5,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8. 종중원인 원고, D, E, K, G, I, L, J 합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E는 1973. 1. 29.에, J은 1975. 9. 16.에, I는 1977. 4. 22.에, D은 1979. 11. 15.에, K은 1991. 4. 24.에, G은 1991. 9. 23.에, L은 2012. 4. 7.에 각 사망하였다.

다. [redacted]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3. 7. 16. 접수 제33174호로,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합유자 원고, D, E, K, G, I, L, J'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4. 7.자 L의 사망에 따른 합유 지분(1/8)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41,484,640원, 지방교육세 3,310,220원, 농어촌특별세 2,043,070원을,[1] ② 2013. 7. 16.자 소유권변경등기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합유지분(1/8 × 6)의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102,362,580원, 지방교육세 17,386,0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1) 피고는 L 지분 외 나머지 합유지분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취득세 등 부분

1)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등을 과세객체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득'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매매, 교환 등)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상속)이든,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등)이든 승계취득(매매 등)이든, 유상취득(매매 등)이든 무상취득(증여 등)이든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합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갖는 점(민법 제272조, 제273조),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예외적인 유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원고 등의 합유로 한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③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유자들의 사망에 따라 자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지분 외에 추가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온 점, ④ 이와 같은 지분의 변동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유사하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2. 8. 8. 원고 등 합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다른 합유자들 합유 지분의 순차 귀속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2012. 4. 7.자 L의 사망에 따른 합유 지분(1/8)의 귀속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피고가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할 지방교육세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

나. 등록면허세 등 부분

등록면허세 역시 유통세로서 그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이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 명의자가 목적물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7. 16.자 소유권변경등기 중 D, E, K, G, I, J의 합유지분(1/8 × 6)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등록세할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